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134
----------	-------

발의연월일 : 2026. 9. 7.

발 의 자 : 소병훈 · 김재원 · 이수진
박용갑 · 이춘석 · 서영석
권향엽 · 이인영 · 전종덕
김선민 · 강준현 · 안태준
김 윤 · 서미화 · 권칠승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건의료기관 내 종사자 간 이른바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의료 환경은 업무의 긴장도가 높고 엄격한 위계 문화가 존재하여 괴롭힘이 발생하거나 은폐되기 쉬우며, 이는 숙련된 의료 인력의 이탈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그 대응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용에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발생 및 그 대응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고,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심리 상담 · 치료 지원 및 법률 · 노무 상담 지원 등으로 구체화함으로써, 보건의료기관 내 안전

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6호,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13조 등).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그 대응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인권침해의 발생 및 그 대응 현황
제13조의 제목 중 “상담 및 지원”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을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실시”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업무를”을 “지원 업무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지원의 내용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위탁”을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제2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위탁”으로 한다.

1. 피해자의 심리 상담·치료 지원
2. 피해자의 법률·노무 상담 및 관계 기관의 구제 절차 안내 지원
3. 피해자의 업무 복귀 및 적응 지원
4. 그 밖에 피해자 보호 및 회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 법률구조기관, 보건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제5호 중 “상담 및 지원”을 “지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① (생 략)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u><신 설></u> 6. ~ 8. (생 략) ③ ~ ⑥ (생 략)	제5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5. (현행과 같음) 6. <u>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인권 침해 예방 및 그 대응에 관한 사항</u> 7. ~ 9. (현행 제6호부터 제8 호까지와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 관은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3 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 원회에 통보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u><신 설></u> 6. (생 략)	제7조(실태조사) ① ----- -----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u>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인권 침해의 발생 및 그 대응 현황</u>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 ③ (생략)

제13조(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
은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하여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지원) ① -----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실시-----.

1. 피해자의 심리 상담·치료
지원

2. 피해자의 법률·노무 상담
및 관계 기관의 구제 절차 안
내 지원

3. 피해자의 업무 복귀 및 적응
지원

4. 그 밖에 피해자 보호 및 회
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지원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시
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 법률
구조기관, 보건의료기관 등 관
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③ -----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u>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④ <u>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지원의 내용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17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① (생략) ② 인력지원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4. (생략) 5. 제13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등의 <u>상담 및 지원</u> 6. ~ 10. (생략) ③ ~ ⑦ (생략)	-----. ④ -----<u>제3항에</u>----- ----- -----. ⑤ <u>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제2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위탁</u>----- -----. 제17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 -----<u>지원</u> 6. ~ 10.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	---